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5
----------	---------

제출일자	2005. 3. 17
제출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 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변경함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함

○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위촉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1년 ⇒ 3년

4. 주요토의 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세무과

라. 기타

1) 신·구조물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2. 14 ~ 2005. 3. 8)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같은조중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를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및 같은조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2호중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를 “건축사 등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도시건축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본문 및 같은조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위원중 <u>세무·도시건축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u>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교수, 지방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명 : <u>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u></p> <p>제1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p> <p>-----.</p> <p>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u>부동산가격공시·도시건축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2. ----- <u>건축사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u> 3. ----- <u>사람</u>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신설> <신설> <신설></p>	<p>제4조(----) -----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5조(임기)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 ----- 3년 -----.</p>

관 계 법 령 발 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